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사 향
의 결 연 월 일	20 . . (제 회)	

해 수 욕 장 의 이 용 및 관 리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('22.7월)에 따라 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해수욕장 평가위원회가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될 예정인 바, 위원회의 유연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정부위원 직급을 하향하고, 시행령 상 불필요하게 된 민간위촉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 및 기존 민간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법 시행일('24.5.1)에 맞춰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해수욕장평가위원회 정부위원의 직급 하향(영 제22조제2항 제1호 개정)

- 위원회의 유연한 구성·운영을 위해 정부위원의 직급을 위원장은 해수부 고위공무원, 위원은 관계부처 서기관급으로 하향 추진

* (현) (위원장) 해수부 차관, (위원) 해수부·행안부·문체부·환경부·해경·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 → (개선) (위원장) 해수부 해양정책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, (위원) 관계부처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

나. 해수욕장평가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(영 제22조 제3항 삭제)

-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및 관련 법률 제·개정에 따라 해수욕장평가위원회가 비상설 협의체로 전환되어, 위촉위원의 임기조항 삭제

다. 기존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음
에도 법 시행('24.5.1.)에 맞춰 임기가 종료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
신설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양수산부차관”을 “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”을 “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영 시행 전 위촉된 해수욕장평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일에 종료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 략)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<u>해양수산부차관</u> 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제22조(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</u> ---
1.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환경부, 해양수산부, 소방청, 해양경찰청 소속 <u>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</u> 공무원(이에 상당하는 특정직·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	1. ----- ----- ----- <u>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
2. (생 략)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	2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④ ~ ⑧ (생 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253